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 정 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조례는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 최근에는 경제 구조와 환경 변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와 고용  
절벽에 따른 일자리 환경 악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에 본 개정안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4%로 상향조정하여 서울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현재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5%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